

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참여단지 모집 공고

우리구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「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3. 13.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1. 지원대상 : 의무관리 및 임의관리(20세대 이상) 공동주택
[근거 :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제3조]
2. 신청기간 : 2023. 3. 13.(월). ~ 2023. 4. 14.(금)
3. 지원분야 :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(안전유지, 기능개선 및 노후시설 정비 등) (붙임1. 참조)
4. 지원비율 : 당해 사업비의 50~70% 지원 (소규모단지는 60~80%)
※ 1개 단지 지원 상한액 : 130백만원
5. 신청방법 :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주체(관리사무소 등)가 신청
 - 가. 제출처 : 중구청 주택과
 - 나. 구비서류
 - 지원신청서
 -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류(임의관리단지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대표성을 가진 관리주체의 결의 또는 입주자등의 합의를 입증하는 서류 등)
 - 사업계획서(사업목적, 내용, 현장사진, 사업비산출내역서, 도면, 착수일정 등)
 - 전문가 자문 결과서 (공사비 20백만원 이상인 사업 중 아파트에서 자문을 요청한 경우)
 - 공동주택관리 자체평가표 (의무관리단지에 해당)
 -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등

6. 진행절차

① 지원신청 및 접수	○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·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· 전문가 자문(20백만원 이상 사업 중 아파트에서 요청한 경우) · 구비서류 및 지원신청서 제출 ○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	공동주택 주택과	3.13. ~ 4.14.
② 현장조사 및 타당성검토	○ 지원신청서류 확인 ○ 사업의 적법성, 적정성 등 검토	주택과, 관련부서	4월 중
③ 심의위원회 개최	○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· 사업별 지원 여부 및 지원액 결정	심의위 (주택과)	5월 중
④ 결정통지 및 교부신청	○ 공동주택에 심의·의결사항 통지 ○ 지원금 교부신청 및 교부	주택과 공동주택	5월 중
⑤ 사업추진 및 관리	○ 사업개시 및 착수 통보 ○ 사업추진 및 진행 관리	주택과 공동주택	5월 ~
⑥ 사업완료 및 정산	○ 사업결과 및 정산자료 제출 · 사업추진 결과, 지출증빙서류 등	공동주택	사업종료 후 30일 내

※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7. 참고사항

가. 신청 사업별 현장조사

- 사업의 적법성, 사업내용 및 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 확인

나.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및 우선순위

- 심의사항 : 지원대상사업의 적합여부, 적정성 등 심의
- 우선순위
 - ▶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위험 및 노후시설물 보수사업
 - ▶ 관리노동자(경비원, 미화원 등) 근무환경 개선사업
 - ▶ 재난안전시설, 에너지절약 및 관리비 절감시설 사업
 - ▶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우선 지원

다. 사업 추진 및 시행

-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사업 착수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개시내용을 「공동주택지원조례」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주택과에 즉시 통보
- 관리주체는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, 착수기한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「공동주택지원조례」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장 신청
-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.

라. 사업시행 및 정산보고

- 관계 법령 준수 및 입주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사업시행
-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추진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

8. 기타 문의사항

가.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과 주택관리팀(☎ 02-3396-5706)

- 붙임 1. 공동주택 지원 신청분야 및 분담률 기준 1부.
2. 지원신청서 등 서식 일체 1부.
3. 전문가 자문 실시절차 1부. 끝.